

국가안보와 내부의 적 대응방안 연구

-독일 통일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김규남*

요 약

국가안보란? 국가의 안전보장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현재 우리의 안보위협은 주적과 잠재적인 적의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적은 다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으로 구분한다. 아놀드 토인비는 “국가의 멸망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시작 된다”고 하였다. 즉 내부의 적을 더 경계하라는 뜻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국민의 분열과 체제전복을 시도하는 내부의 적을 인식하고 있는가? 본고에서는 일부이기는 하나 사회 전 분야에 침투하여 적과의 내통은 물론 유언비어의 날조,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심지어 합법을 가장하여 입법기관에 까지 입성하여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우리 내부의 적과 그 숙주세력인 동조자 및 방조자들을 어떻게 파악하며 선진국의 국가 전복세력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거 서독이 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했던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내부의 적에 대한 전 역량이 결집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On the Study of National Security and Corresponding Strategies gainst Inside Enemies

- A Case Study of German Unification Process -

Kim Gyu Nam*

ABSTRACT

What is national security ? National security is reduced for state national security. At present, national security threats can be divided into main enemies and potential ones and main enemies are separated inside and external ones. Arnold Toynbee said , " The destruction of the state is starting not from outside but from inside". This means we must be aware of inside enemies. How much do we know of the internal enemies who are trying to divide the people and overthrow the state? This paper focuses on corresponding strategies to depend our democratic state against inside enemies who penetrate all sectors of society and fabricate rumors , incite violence , and even try to overthrow our legitimate state with the base on the lessons of past West Germany case.

Key words : the internal enemy, defend democracy, freedom , security, security, main enemy

1. 서 론

안보(安保)는 사전적으로 보면 편안히 보전됨 또는 편안히 보전함이며 흔히 안전보장을 줄여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안보위해세력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세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로는 국내 안보위해세력, 해외 안보위해세력, 북한, 주변국을 들 수 있다[1]. 이러한 안보위협세력은 크게 주적의 위협과 잠재적 적의 위협으로 분류하며 주적은 다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으로 구분한다.

최근 들어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란 군사 및 비군사 분야에 대한 국내·외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관련분야의 위협을 도출하여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전쟁을 억제하도록 외부위협과 내부위협을 동시에 대비하여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국가의 이러한 안보위협 변화의 특징을 보면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은 지속되고 있으며, 비군사적 위협 역시 증대되고 있어 테러, 사이버 공격, 해적, 자연재해, 전염성 질병,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 각국은 자원과 영토 확보, 종교·인종 갈등으로 인해 국지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방향은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에 동시 대비하는 포괄안보 개념과 지금까지 군이 전담하던 안보는 민·관·군·경의 상호협조와 국제적 공조를 통한 협력안보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적(敵)이란 ‘보면 서로 싸우거나 해치고 자하는 상대’를 말한다. 우리가 북한을 명확한 주적으로 본 것은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등으로 안보불안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사용되었으나 한동안 주적의 개념을 잊고 살다가, 지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명백히 밝혀짐에 따라 2010년부터 주적의 개념을 분명하게 적시한 것이며, 이는 국가안보의 개념적 정의로서 다행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아놀드 토인비(영, Arnold Toynbee, 1852~1883)는 “국가의 멸망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시작된다”고 하였다. 즉, 국가는 내부의 적에 의해 분열되어가면서 서서히 멸망한다는 말인데 과연 우리는 얼

마나 내부의 분열과 전복을 획책하는 적을 인식하고 있는가? 주적을 잊고 살면서 내부의 적을 인식하기나 했을까? 1997년 2월 12일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망명요청을 한 황장엽(전 북한 노동당 비서, 1923~2010)은 국내에 약 5만여 명의 간첩이 암약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의 내부의 적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북한을 추종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적의 참상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도발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궤변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 장기간 관련기관의 내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내란음모사태를 접하면서 모든 국민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현재까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와 그 잔당들이 오늘도 뗏뗏이 확보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전 국민이 우리 내부의 적을 확실히 인식하고 대응하기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그러한 내부의 적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던 과거 서독의 사례에서 그 대응 방안을 찾아 보고자한다.

2. 우리 내부의 적

2.1 내부의 적이란?

우리는 내부의 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사전적으로 보면 <표 1>에서와 같이 내적(內賊), 내응(內應), 통관(通款)으로 사용하고 있다.

내적(內賊)이란 내부의 적이라는 뜻과, 나라나 사회안의 도둑이나 역적 두 가지 뜻이 있다. 내응(內應)이란 내부에서 몰래 적과 통함을 말하며, 통관(通款)이란 자기편의 내부사정을 몰래 적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표 1> 내부의 적 관련 용어

용어	내용
내적	1. 내부의 적. 2. 나라나 사회 안의 도둑이나 역적.
내용	내부에서 몰래 적과 통함.
통관	자기편의 내부 사정을 몰래 적에게 알려줌.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관념 속에 내부의 적을 단순히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만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그들은 사회주의 의식화를 통해 진보적 인텔리 행세를 하며 사회 각층의 좌파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시로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는데, 더 큰 문제는 지난정부시절 그들의 동조·비호세력의 일부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역사, 방송과 언론, 문화 예술계에게까지 침투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적과 내용은 물론 유언비어의 날조,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심지어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입법기관에 까지 당당히 입성한 우리 내부의 적과 그 숙주세력인 동조자 및 방조자들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하는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개인적 판단이 궁극적으로 적에게 이로운 결과가 나타났다면 내적이 될 것이다. 또한 정치인이나 개인이 국민 모르게 적과 내통했다면 이는 내용이 된다. 과거 정권하 우리의 주적에 대해 대북(對北)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10년간 <표 2> 에서와 같이 대북 식량지원 외에 3조 6천억원의 현금과 현물을 더하여 대북 지원·경험의 총 규모는 8조 6,80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정부 집계 결과, 이 같은 규모는 같은 기간 그들의 혈맹인 중국의 대북지원액 19억 달러의 3.7배에 달했다고 한다[2]. 또한 그 대북지원액 중 상당부분이 우리 국민이 알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고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와같은 지원이 국가안보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다면 이는 통치행위인가 아니면 내적과의 내용인가?. 당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상황은 1990년 이후 구조론의 붕괴와 동구 공산권의 자유화바람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이 급감하였고, 1994년 김일성 사망에 이은 북한지역의 계속된 자연재해는 김정일로 하여금 선군정치와 고난의 행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부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 초까지 약 200~300 여만 명으로 추정하는 아사자가 발생한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할 때 인도주의적지원은 당연 하였겠지만, 현금 지원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고 시행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표 2> 1995~2010년까지 대북 식량지원 현황
단위 : 만톤, 억원

구분	지원 실적	남북협력 기금	지원 방식	지원시기
1995	국내산 쌀 15	1,854	무상	'95.6-10
2000	식량50 외국산 쌀30 중국산 옥수수 20	1,057	차관	'00.10-01.3
2002	국내산 쌀40	1,510	차관	'02.9-03.1
2003	국내산 쌀40	1,510	차관	'03.7-12
2004	국내산 쌀 10 외국산 쌀20	1,359	차관	'04.7-05.2
2005	국내산 쌀 40 외국산 쌀 10	1,787	차관	'05.7-.6.1
2006	국내산 쌀 10	394	무상	'06.8-07.6
2007	국내산 쌀 15 외국산 쌀 25	1,505	차관	'07.7-12
2010	국내산 쌀 0.5	32	무상	'10.10
계	국내산 쌀 180.5외 외국산 쌀 85 중국산 옥수수 20	11,008	차관 : 8,728 무상 : 2,248	

우리의 혈맹인 미국의 경우, 연방 헌법에서 적을 규정함에 있어 자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적을 추종하거나 적에게 도움이나 위안을 주는 행위도 반역죄로 보고 “미합중국에 대한 반역은 미국에 대해 전쟁을 하거나, 적을 추종하여 도움과 위안을 주는 행위를 의미 한다”고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에는 국방정보를 수집하고 취득하여 외국 정부에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으며 연방헌법의 간첩죄, 정부전복죄 외에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국가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전북활동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등이 있다[3]. 우리나라도 나라나 사회 안의 도둑이

나 역적, 내부에서 몰래 적과 통한 자, 우리의 내부 사정을 몰래 적에게 알려준 자 등을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 적용을 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소급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방국에서 적용하는 국가전복에 대응하기위한 관련 법령을 <표 3>에서와 같이 우리 실정에 부합되도록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3>우방국의 국가전복세력에 대응 법령

구분	주요 법령
미국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 1950) 미 연방헌법(U.S. Code)
영국	공공비밀보호법(Official Security Act 1989)
일본	파괴활동방지법
캐나다	국가기밀법(Official Security Act)
독일	형 법(Strafgesetz) 공무원법(Beamtengesetz) 연방헌법수호법(Bun desverfassungsgesetz) 결사법(Vereinsgesetz)

2.2 반국가 단체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써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를 참칭 한다’란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를 변란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 한다[4].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조직은 <표 4>에서 <표 5>와 같이

<표 4> 현재 활동 중인 반국가단체

단체명	확정판결 시점
조선노동당	1960년 4월 5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1970년 11월 24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1990년 9월 11일

12개 단체이다. 이중 계속활동 중인 반국가단체는

<표 4>에서와 같이 조선노동당,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등 3개 단체로 이중 조선노동당은 북한에, 조총련과 한통련은 일본에 있어 우리 정부의 강제력이 미칠 수 없는 곳에 있고, 국내에서 직접 활동하지 않는 조직이라서 현재 반국가단체로 확정 판결 후 강제력 있는 법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는 반국가단체는 통일혁명당,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재일한국 민주회복통일추진국민회의(한민통), 제현의회(CA그룹),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남한조선노동당, 구국전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포함하는 <표 5>에서와 같이 9개 불법 단체들이다.

하지만 이번 내란음모사태에서 나타났듯이 공안기관에서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경우와 같이 현재 국내·외에는 많은 반국가 단체들이 숨방망이 처벌 이후에 일부 명칭을 바꾸고 더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5> 현재 소멸된 반국가단체

단체명	확정판결 시점
통일혁명당	1969년 9월 23일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1980년 9월 5일
재일한국 민주회복통일추진 국민회의(한민통)	1981년 1월 23일
제현의회(CA그룹)	1987년 7월 20일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	1991년 11월 23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1992년 4월 24일
남한조선노동당	1993년 11월 9일
구국전위	1995년 7월 28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2000년 10월 12일

2.3 이적 단체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선동하는 단체를 뜻한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 중 현재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적단체는 <표 6>에서와

<표 6> 현재 소멸된 이적단체

단체명	확정판결 시점
범청학련 남측본부	1993년 9월 28일
남한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 준비위	1996년 5월 14일
사회민주주의 청년동맹	1996년 9월 10일
노동자정치활동센터	1997년 6월 27일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1998년 7월 28일
영남위원회	1999년 9월 3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2009년 1월 30일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2010년 7월 23일

같이 범청학련 남측본부, 남한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동맹 준비위, 사회민주주의 청년동맹, 노동자정치활동 센터,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영남위원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천연대) 등 8개 단체로 보고 있으나 국가정보원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적 단체 중 2~3개는 명칭 변경을 통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 중 현재에도 계속 활동 중인 것으로 판단하는 이적단체는 <표 7>에서와 같이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자통), 범민련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청주통일청년회, 우리민족연방계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등이다. 이러한 5개 단체는 확정판결 이후에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이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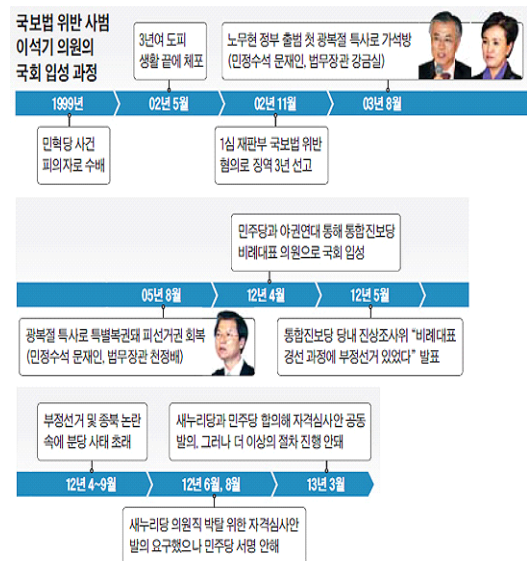
<표 7> 현재 활동 중인 이적단체

단체명	확정판결 시점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자통)	1990년 8월 28일
범민련해외본부	1994년 5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1997년 5월 16일
청주통일청년회	2011년 12월 8일
우리민족연방계통일추진회의 (연방통추)	2012년 1월 27일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이적단체는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대표적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북한이 대남공작차원에서 결성한 통일운동전선체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가 직접 관할하고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4 최근 RO(Revolution Organization) 사태

최근 언론의 중심에 선 내란음모사태의 경우, 현재 조사 중이므로 차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하겠지만, (그림 1)에서와 같이 그는 1999년 반국가단체 지하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 활동을 하다가 2002년 검거되어 2003년 실형을 받았으나 무슨 연유인지 같은 해 가석방되었고, 2005년에는 광복절특사로 특별복권되어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이후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중북 지하조직을 이끌면서 그를 사면한자와 '야권연대' 라는 숙주세력의 비호 아래 마침내 2012년 4월 총선에서 최대의 수혜자가 되어 국회에 입성하였다[5].



(그림 1) 국보법 위반 사범 국회입성 과정 [6]

따라서 수배-구속-가석방-특별 복권-제도권 진입을 하는데 있어 잔존 세력이 RO라는 명칭으로 조직을 재건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체포동의안

의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률 89%로 통과한 이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강제 구인을 위한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의 실종은 우리 공안 기관의 현주소를 보는 듯 했다.

2.5 무엇이 문제인가?

정치인의 정치 및 통치행위와 이적행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어떤 이유이든지 그 행위가 국가이익에 반하며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적행위로 적법 절차에 의거 처리되어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결성했거나 가입한자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위자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것이 우리의 법 집행체계의 문제 일 것이다. 3년간 수배를 피해 도망 다닌 시국사범에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광복절 특사를 남발하고 또 특별복권 시켜주는 정부와 개인은 누구의 눈치를 보기에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것일까? 또한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로 확정 판결이 나도 계속 활동하거나 구성원들이 단체의 이름만 바꾸거나 여타의 조직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활동을 계속하는 단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관련 기관과 개인의 직무유기이며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여 뿌리를 뽑는 의지가 필요하다.

3. 독일의 통일과정의 사례

3.1 서독, 내부의 적 통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와 비슷한 시기와 상황에서 동·서간 교섭이 실패하고 냉전이 구체화되면서 1949년 5월 서독은 독일연방공화국(BRD)을 수립하였고, 1949년 10월에 동독은 독일민주공화국(DDR) 수립을 선포하면서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다. 건국 과정에서 서독정부는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기 위해 헌법수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을 만들어 공산주의와 극좌세력들의 자유 민주질서에 대한 위해활동 감시뿐만 아니라, 극우세력들의 자유민주주의 파괴활동에 대해

서도 철저한 감시로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발본색원하여 헌법 파괴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8개의 특정 조항의 법체계를 갖추고 담당공무원에게 반국가단체에 대해서는 도·감청을 포함하여 제한 없는 정보수집활동을 보장하였다. 또한 반국가단체의 사회활동의 원천 봉쇄를 위해 1964년에는 '사회단체규제법'을 제정하여 헌법재판소를 경유하지 않고 중앙 및 지방정부 내무장관직권으로 700여개의 위헌단체를 해체하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였다. 주목 할 것은 빌리브란트(독일, Willy Brandt / Herbert Ernst Karl Frahm, 1913~1992)가 1966년 외무장관이 되면서 기존의 서방정책에서 동방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그는 1969년에는 좌파인 사민당(독일사회민주당 SPD) 출신으로 자유당(독일자유민주당 FDP)과 연립하여 서독의 4대 총리가 되었다. 총리취임 후 대내 정책이 탄력을 받도록 하기위해 대외정책에도 역량을 집중하였는데 그때 까지 부진하게 추진되던 동방정책을 공식화하여 동독을 포함하는 주변국들에 대해 1970년엔 폴란드를 방문해 나치희생자 위령탑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등 적극적 화해와 관계개선을 추진하였다[7].

한편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독일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1972년에는 '급진주의자 훈령'이라는 법령을 발령하여 서독의 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세력, 극단적인 좌익세력, 국가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에 대해 서독의 공직에 진출을 금지하는 것을 등 반국가단체에 몸담았던 자들도 잠재적 반역자로 보았으며, 이미 취업을 했더라도 과거의 경력이 밝혀지면 해임 조치되도록 하였다. 특히 공직의 영역을 공무원은 물론, 공공부문의 단순노무직이나 계약직에게 까지 확대하여 적용 한 것은 내부의 적이 생존할 토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특단의 조치였다.

3.2 독일이 주는 교훈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동서화해를 통해 냉전시대 동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하였고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통일시기를 지연시켰다는 일부의 평가도 있으나 통일 독일은 현재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그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적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는 주지하듯이 서독은 건국 초기부터 강력한 법 집행으로 동독 측의 일체의 공작에 대응한 결과, 1987년까지 약 350여만 명의 취업희망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그 중에서 2,200여명의 위헌성분들을 가려내어 임용을 거부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 후에 확인된 동독의 공작은 국가안전부(Stasi) 산하 대(對)서독 관련기관(해외 공작총국)과 동독 인민군산하 군첩보국, 구소련의 첩보기관과 협력하여 이 기간에도 서독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작을 벌여 1989년까지 연방 총리의 전화를 도청하였고 총리비서를 포섭하는 등 서독의 전 분야에 걸쳐 포섭대상(정부기관, 군사분야, 정당, 노조, 경제 분야, 언론, 문화와 스포츠, 학계, 탈동독민 및 반체제 인사, 교회, 기타조직 및 기관)을 선정, 수요에 따라 공급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포섭 활용하였다[7].

그 결과 정치인, 지식인, 군 장성, 종교인, 학생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 동독 방첩업무 담당자까지 포섭되었으며 서독의 정당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작 결과 1972년에는 총리불신임안 투표를 주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작활동에 활용되어 투입된 동독 비밀정보원은 약 3만 명에 달하였던 점과 <표 8>에서와 같이 정부 목표내부 정보원과 비공식 협조자 및 접촉자가 상상을 초월 할 정도였으며, 이들의 공작방식이 재정지원, 협박, 살해, 함정, 미인계는 물론 여비서에 대해 미남공작원까지 활용했던 전 방위 무차별적 공작 세력이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표 8> 슈타지 공작총국의 목표 및 내부정보원 [8]

첩보 목표	정보 목표 내부 정보원(%)	비공식 협조자 및 접촉자(%)
경 제	39	27
정치·사회단체·정당	19	17
행정부	19	8
군 대	8	12
보안기관	5	10
기타(여타 목표)	9	26

이에 남북의 분단 상황에서 북한과 대처하고 있는 우리가 독일의 내부의 적 통제와 같은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먼저 서독정부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강한 의지력이다.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정비하여 집권당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 추진했기에 그나마 집요한 동독의 공작에 대한 방어가 가능했을 것이다. 둘째, 국가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는 좌·우와 진보·보수의 이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빌리브란트 역시 좌파 총리로서 집권당마저도 당황할 정도로 강력하게 ‘급진주의자훈령’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위헌 세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통일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으며, 통일이후에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1991년 최종 파기되었다.

4. 결 론

일찍이 손자(孫子)는 용간 편(用間 篇)에서 ‘적군을 상대하여 수년간을 전쟁에 대비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루아침에 결정 된다’(相守數年 以爭一日之勝)고 하였다.

우리는 역사 이래 내부의 적에 의하여 서서히 무너진 이웃나라와 그러한 내부의 적을 단호하게 통제한 독일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일부정치인에 의해 내부의 적을 통제하기위한 관련분야의 법령발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일부 정치인의 노력도 당리당략보다 국가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전 국민의 단결이 우선시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첫째,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의지가 절실하다. 정치인은 좌·우파, 진보·보수를 떠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를 위한 국민적의지로 결집되어야 하며 현 시스템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는 스스로 정화하여 내부의 적의 발붙일 숙주와 토양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 정부의 체제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내부의 적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관련행위자 공개와 강력한 법적용이 요구된다.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관련행위자 개인을 포함하는 시국사범을 정치적 판단

이나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 행위자가 뉘우침이나 사상전향이 전혀 없어도 사면권을 남발하는 행태의 중지와 아울러, 독일처럼 대법원에 의해 내부의 적이나 단체로 판명되면 강제해산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 공무원에게는 수사과정에서 도 감정을 포함하는 체포·증거자료 몰수 등 강력한 법체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적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정부정책이나 통치행위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 국민을 기만하여 적을 이롭게 한 역적과 내부에서 몰래 적과 내통한 자, 국기를 흔들거나 이를 시도하는 조직에 대해 예산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법적용이 미흡하여 그들의 생존 토양을 마련해준 과오가 식별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임기 중 또는 임기만료 이후에도 성역 없이 소급 적용하여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되, 끝까지 추적하여 이적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 할 제도적장치가 필요 할 것이다.

넷째, 명확한 내부의 적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민주와 진보진영과 북한을 추종하고 그들의 노선과 명령에 의거 행동하는 중북 좌파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 잣대의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인정 여부, 현 체제는 비판하면서 적에 대해서는 관대한 찬양 및 동조여부, 적에 대해 긍정적인 편향된 시각과 현 체제의 부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익에 반하는 자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부의 적으로 규정되면 정부부처, 국회의원, 공무원, 교사, 군, 병원, 공공기관, 언론, 문화예술 등 국민의식과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는 원천적으로 취임 할 수 없도록 서독의 ‘급진주의자훈령’ 같은 법 제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전 국민은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하고 민·관·군·경이 협조된 협력안보를 위해 군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로써 전 장병들에게 명확한 국가안보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내부의 적이 발붙일 토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주적에 대해서는 완벽한 상시전투태세준비를 통해 평시에는 전쟁억지력을, 전시에는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 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유동렬, “국가안보위해 세력의 반국가적 활동 실태와 대응책”, 치안정책연구소. pp 1-4. 2010.
- [2] 조선일보 2009년 6월 3일자 中 인용
- [3] 김필재, “어느 국가도 국체를 위협·전복하려는 사상-활동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 2010.
-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5] 류석춘, “누가 이석기라는 ‘從北기생충’을 키웠나”, 朝鮮칼럼, 2013년 9월 9일자 中 인용
- [6] 조선닷컴 2013. 08. 31일자 A면 5단 中 인용
- [7] 평화문제연구소 “동서독 통합 20주년 독일통일 바로알기”,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pp 64-68. 2010.
- [8] 평화문제연구소, “동독 슈타지의 침투 그리고 서독의 방어”, pp 169-174. 2012.

[저자소개]



김 규 남 (Gyu-Nam Kim)

1984년 2월 강원대학교
1998년 8월 호남대학교 북지행정대학원
2012년 2월 상지대학교 대학원

email : baguni52@naver.com